

부사장제 운영규정

제 정 : 2007. 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사장의 선임방법, 직무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사장의 임명 및 해임) 부사장은 상임이사중 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제3조(부사장의 직무) ① 부사장은 상임이사의 소관부문 업무를 담당하며,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사장직할부서의 경우 사장결재시 부사장을 경유한다.

제4조(부사장에 대한 예우) ① 부사장에게 별도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대한 지급 기준은 「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」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(제정)

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07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내규의 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정 및 개정된 다른 내규에서 부사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. 단, 『인사관리규정』 제40조 제1항, 『임원보수및퇴직금규정』 별표1의 부사장은 현행을 유지하며, 『위임전결규정』 제6조 제4항, 『경영계획 및 성과평가규정』 제4조 제1항 및 『경영계획 및 성과평가요강』 별표1의 부사장은 사장으로, 『지식경영 및 업무제안규정』 제21조 제3항, 『경영계획 및 성과평가규정』 제18조 제2항, 『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운영요강』 제2조 제3항, 『전산업무규정』 제4조 제2항, 『보안심사위원회요강』 제2조 제2항, 『비상계획위원회요강』 제2조 제2항, 『비상근무요강』 제9조 제1항, 『사장결재문서처리절차』 제1조 및 제2조의 부사장은 소관업무담당이사로 개정한다.